

건축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

1979. 11. 22
건설부령 제253호

건축사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) ① 영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작성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용할 건축물과 주택·축사·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0동이상을 건축하게 되어 이종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. ② 영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또는 특수공법에 의한 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설계설명서
2.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
3. 품목 및 총괄표
4. 구조계산서·전기설비용량계산서·조도계산서·방난방 부하계산서·장비 용량계산서
5. 특수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특수공법에 의한 설계도서인 경우에 한한다)

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) 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및 출제방법은 별표1과 같다.

제13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“도지사”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”를 각각 “도지사에게”로 하고, 동조 제3항중 “건설부장관은”을 “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 제1항중 “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”를 “도지사에게”로 한다.

[별표1] 내지 [별표3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지 제12호서식]·[별지 제13호서식]·[별지 제19호서식]·[별지 제20호서식]·[별지 제21호서식]·[별지 제24호서식]·[별지 제25호서식]·[별지 제26호서식] 중 “건설부장관”을 각각 “시장·도지사”로 하고, [별지 제22호서식]중 “건설부장관귀하”를 “시장·도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시험과목별 출제범위및 출제방법

별표 1

과 목	출 제 범 위	출 제 방 법
건축구조	구조일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	필기(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)
건축시공	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적산	
건축법규	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	필기(주관식및 객관식혼용을 원칙으로 한다)
건축계획	단지계획 계획원론 및 각론 건축설비 건축사	
건축설계	설계설명서 배치도 평면도 및 입면도 단면도 및 상세도	실 기